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118092 가상자산 인도청구의 소 등

원 고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안영주

피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지

담당변호사 원경섭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또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별지 2 표 '원고' 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지갑주소' 란 기재 주소로 같은 표의 'E 수량' 란 기재 수량만큼의 E 코인을 각 전송하고, 피고 C, D는 공동하여 별지 2 표의 '원고' 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가상자산의 일종인 F코인(FCoin)의 발행을 위하여 설립된 스위스 법인인 G[G, 위 재단의 이름은 이후 'H'으로 변경된다. 이하 'I'이라 한다)이 2017. 5.경진행한 암호화폐모집(ICO, Initial Coin Offerings)²⁾ 또는 그 전에 진행하였던 암호화폐사전판매(Pre-ICO)³⁾ 과정에서 투자자로 참여하여 별지 2 표 'E 수량' 란 기재 수량만큼의 F코인을 취득한 자들이다.

¹⁾ 당초 원고는 피고 B, A에 대한 각 E코인의 인도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으나, 이 사건 제8회 변론기일에서 위 인도 및 손해배상을 단순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²⁾ 암호화폐모집(ICO, Initial Coin Offering) 절차는 주식의 경우에 빗대어 볼 경우 주식공모(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 대응하는 것으로 통상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인을 발행하여 배정하는 절차이다.

³⁾ 암호화폐사전판매(Pre-ICO) 절차는 암호화폐모집 절차 이전에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구매자들을 상대로 발행이 예정된 코인을 판매하는 절차이다.



- 2) 피고 B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A는 마케팅 대행, 홍보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 3) 피고 C은 현재 I의 이사장이고,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I이 그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사내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는 자이다.4)
- 4) 피고 D는 2019. 5. 20.부터 J가 해산되던 2021. 3. 22.까지는 위 회사의 사내이 사 및 대표이사로, 위 회사가 해산된 후에는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피고 B이 설립되었을 무렵부터 2023. 3. 14. 이전 무렵까지⁵⁾ 피고 B의 사내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는 자이다.

나. J와 I 간 용역계약 체결

J와 I은 2019. 6. 1. J가 I에 필요한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 (Service Agreement, 이하 'J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I의 이 사건 에어드랍 절차 진행

- 1) I은 2019. 3.경 그 홈페이지 등에 일정한 신청 절차를 마친 F코인 보유자들에게 그 F코인 보유량과 동일한 양의 E코인을 에어드랍(air-drop)6)하는 형태로 지급하여 주 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 2) I은 2019. 3. 25.부터 2019. 9. 30.까지 F코인 보유자들로부터 에어드랍 신청을 접수한 후 총 에어드랍 대상 수량인 452,130,130 E코인 중 약 55%인 247,595,031 E코인을 위 에어드랍 신청자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04,535,099 E코인은 그 이후 무

⁴⁾ 피고 C이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으나 위 피고는 2019. 5. 20. J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다.

⁵⁾ 피고 B의 설립일로부터 가까운 2021. 10. 25. 발급된 피고 B의 법인등기부등본(갑 제11호증)에는 피고 D가 피고 B의 사내이 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2023. 3. 14. 발급된 피고 B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16호증)에는 피고 D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⁶⁾ 특정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신규 상장 되는 가상화폐를 일정 비율로 무상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렵 소각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진행되었던 E코인 에어드랍을 '이 사건 에어드랍'이라한다).

라. J의 해산 및 피고 B. A의 설립

J는 2021. 3. 22.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고, 2021. 6. 11. 그 청산종결등 기를 마쳤다.

마. 피고 B, A와 I 간 용역계약 체결

피고 B, A는 J가 해산된 날인 2021. 3. 22. 설립되었고, 위 피고들과 I은 2021. 4. 13. 위 피고들이 I 플랫폼의 마케팅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Service Agreement, 이하 피고 B과 I이 체결한 위 용역계약을 '피고 B의 용역계약', 피고 A와 I이 체결한 위 용역계약을 '피고 A의 용역계약'이라 하고, 위 피고들과 I이 체결한 위 용역계약을 합하여 지칭할 때는 '피고 회사들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1, 1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을 제5 내지 6, 11, 14,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A에 대한 각 E코인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J는 원고들이 보유한 F코인 수량만큼의 E코인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B 또는 A는 J의 원고들에 대한 위 계약상 의무를 승계하였거나, 법인격 남용론에 의하여 J의 원고들에 대한 위 E코인 인도의무를 직접 부담한다. 따라서원고들은 피고 B 또는 A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F코인 수량만큼의 E코인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다만, 원고들은 J의 의무를 승계하거나 법인격 남용론에 의하여 J의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주체가 피고 B 또는 A 중 어느 회사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므로, 선택적으로 피고 B 또는 A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F코인의 수량만큼의 E코인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피고 B 또는 A가 J의 원고들에 대한 E코인 인도의무를 승계하였거나 법인격 남용 론에 의하여 위 의무를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J의 계약상 의무 승계

I은 형식적으로만 설립되었을 뿐이고, 실제 F코인 개발 프로젝트는 K라는 회사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이후 J가 설립되면서 K의 업무 및 계약상 지위는 곧 J로 그대로 승계되었다.

J는 이후 2019. 3.경 그 홈페이지에 '재단은 지난 3월 25일 커뮤니티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4월 5일 UTC 12시 기준으로 일반 L, M 계좌, N 계좌에 보유중인 F코인 수량만큼 E토큰을 에어드랍 하겠다고 공지하였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고, 나아가 2019. 3.경 가상자산 거래소인 O 거래소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F코인 보유자들에게 E코인을 에어드랍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J는 다른 F코인 보유자들과의 차별 또는 불합리한 제한 없이 원고들에게 그 F코인 보유수량만큼의 E코인을 인도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J의 용역계약 중 J의 의무를 규정한 'Annex A' 부분 중 'I. Services' 부분과 'II. Deliverables' 부분 중 'E TokenNet' 부분 및 'E Token Airdrop' 부분은 J의 E코인 에어드랍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비록 J의 용역계약은 J와 I 간 계약이기는 하나, ① 피고 B의 용역계약의 'Annex A' 부분 역시 'I. service' 부분에서 'Services for



Coin Transition & Exchanging Transition'을 피고 B의 의무로 규정하여 I이 기존에 발행하였던 F코인을 E코인으로 변경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었고, ② I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역시 '에어드랍, 서비스의 제공, 고객고충사항 해결' 등 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피고 B에게 위탁하고 있음을 명시한 바 있으며, ③ 나아가 피고 A 역시 스스로 직접 그 홈페이지에서 'P를 개발/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이후 실제로 I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J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B 또는 피고 A는 J로부터 원고들에 대하여 E코인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J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E코인 인도의무를 승계한 피고 B 또는 A는 선택적으로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보유한 F코인 수량만큼의 E코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법인격 부인론에 따른 J의 의무 부담

J는 원고들에 대한 E코인 인도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21. 3. 22. 해산되었고, 같은 날 피고 B, A가 각각 설립되었다. 피고 B, A의 사무소는 서로 같은 건물의 옆 호실(서울 여의도 Q빌딩 R호 및 S호)에 있고, 피고 D는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B, A의 감사인 T이나 피고 A의 사내이사인 U 역시 모두 피고 C, D의 지시를 받는 직원들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 B, A는 모두 피고 C, D가 운영하는회사들이다.

위와 같은 J의 해산, 피고 B 및 A의 설립 경위와 그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볼때, 피고 B, A는 J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J의 원고들에 대한 E코인 인도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이른바 '법인격 남용론'의 법리에 의하여도 J의



원고들에 대한 E코인 인도의무를 직접 부담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피고 B 또는 피고 A에 대한 각 E코인 인도청구는, J가 직접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F코인 수량만큼의 E코인을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I이 기존에 발행하였던 가상화폐인 F코인의 보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J가 당연히 원고들이 보유한 F코인 수량만큼의 E코인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J가 원고들에 대하여 E코인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당사자인 원고들과 J 사이에 계약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갑 제17, 29호증 및 을 제11, 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I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서 2019. 3. 8.경 'a hardfork is impending. An air-drop of new ERC20-based tokens is in prepartion to existing Fcoin holder s'라는 문장이 포함된 이메일7'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V 거래소의 직원에게 발송된 사실, ② J의 용역계약 중 J의 의무를 규정한 'Annex A' 부분 중 'I. Services' 부분은 'P new launching and Mainnet development'라고 규정하고 있고, 'II. Deliverables' 부분 중 'E TokenNet' 부분은 'Airdrop registration with KYC'라고, 'E Token Airdrop' 부분은 'Airdrop Distribution'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 B의 용역계약의 'Annex A' 부분 역시 'I. Service' 부분에서 'Services for Coin Transition & Exchanging Transition'을 피고 B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I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에어드랍, 서비스의 제공, 고객고충사항 해결 등 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피고 B에

⁷⁾ 원고들은 J가 위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메일의 "발신인"란에는 I의 계정으로 보이는 계정(이메일 1 생략)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이메일은 I이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게 위탁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 A의 채용공고에는 'P를 개발/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I의 이메일은 I이 새로운 가상자산인 E코인의 에어드랍을 실시한 계획이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인 V 거래소에 기존 F코인 보유량을 확인하고, E코인의 에어드랍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문의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8) I 측이 V 거래소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를 두고 원고들에 대한 의사표시라고볼 여지도 없어 위 이메일만을 들어 I 또는 J가 원고들에게 E코인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원고들이 들고 있는 J의 용역계약이나 피고 회사들의 용역계약은 모두 I과 J 사이의 용역계약 또는 I과 피고 회사들 사이의 용역계약으로서 원고들과는 무관하고, 이에 위 각 계약으로부터 J가 원고들에게 E코인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에 I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피고 A의 채용공고 내용만으로 J가 원고들에 대하여 E코인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4)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내지 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은, I이 정한 신청 기간 내에 F코인의 보안키를 입력하는 등 I이 정한 신청 절차를 거친 F코인 보유자들에게 E코인을 에어드랍해주겠다는 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될뿐이고, 그밖에 갑 제2, 9, 14, 15, 17, 19 내지 21, 24, 28, 2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을 제11, 14, 19호증의 각 기재 등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I

⁸⁾ 갑 제17호증 제2면의 "We would like to inquire the following: 1. Could you please confirm Fcoin amounts held on your exchange in accordance to the snapshot schedule, and whether snapshot at your exchange is possible? 2. Would you exchange be able to air-drop new tokens? 3. What would be your conditions for listing the new tokens subject to air-drop?" 부분 참조.



이 정한 신청 기간 내에 I이 요구한 신청 절차를 마쳤다거나, 9 원고들이 직접 I 또는 J와 E코인의 인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밖에 J가 원고들이 보유한 F코인 수량만큼의 E코인을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원고들과 J 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J가 원고들에게 E코인을 인도하여야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이 J가 원고들에게 E코인을 인도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J에게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 B, A가 그와 같은 의무를 승계하였다거나 법인격 부인론에 의하여 위 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면서 그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 B, A에 대한 이 사건 E코인 인도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C, D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I이 2017. 4.경 설립된 이후부터 I의 이사였고, 현재는 I의 이사장이며, 2019. 5.경까지는 J의 사내이사였고,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J를 지배하여 왔다. 한편, 피고 D는 2019. 5.경부터 2021. 6.경까지 J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J가 2021. 3. 22. 해산되어 2021. 6. 11. 청산종결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J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까지 수행하였던 자이다.

I 및 J는 원고들의 전자지갑 주소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J를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여 오던 피고 C, D는 E코인을 새로 발행하면서는 기존의 모든 F코인 보유자들에게 그 F코인 보유수량만큼 E코인을 차별 없이 인도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⁹⁾ 원고들 가운데 원고 W, X, 위 원고들이 신청 기간 내에 E코인 에어드랍을 신청하였음에도 E코인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I 측에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28호증 제1 내지 6면 참조), 그 점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I이 정한 신청기간 내 신청 절차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F코인 보유자들이 자금 횡령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9.
4. 9.경 I의 이사였던 피고 C과 스위스인 Y의 불신임에 대한 찬성 투표를 하자 피고
C. D는 위 F코인 보유자들에게 E코인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C, D는 2019. 3.경부터¹⁰⁾ 2019. 9. 하순경까지 원고들 중 일부가 P홈페이지에서 에어드랍을 신청을 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위 원고들을 E코인 에어드랍대상에서 누락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신청 기간 내에 통상적으로는 요구되지 않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보안키(Private key)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E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던 원고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원고들이 E코인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위법하게 박탈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J¹¹⁾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상법 제401조의2에서 같은 법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사'로 보는 것으로 정한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서 원고들에게 상법 제401조의2,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D는 J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에게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서로 공동하여부담한다.

뿐만 아니라 J는 형식적으로만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 B, A를 설립함으로써 그 실체를 유지하여 오고 있고, J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오고 있던 피고 C, D는 피고 B, A의 실질적으로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¹⁰⁾ 원고들은 피고 C, D가 2019. 4. 9.경 피고 C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이루어진 이후 원고들에 대한 차별 취급을 계획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불신임 투표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9. 3.경부터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¹¹⁾ 원고들은 당초 피고 C에 대하여 I의 이사 지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묻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피고 C의 I 이사 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철회하였다(원고들의 2024. 8. 7. 자 준비서면 제4 내지 5면 참조).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 C은 I 이사로서 형식상 자금 인출의 도관(導管)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인 I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들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 A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 피고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나아가 위 피고들을 통하여 P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 D는 피고 B의 사내이사직을 역임한 후 현재에도 위 피고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 D는 피고 B, A의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위에 기하여서도 원고들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12)

한편,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된 날 무렵 1 E코인의 시가는 200원 가량이었으므로, 피고 C, D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E코인의 수량(이는 원고들이 보유한 F코인의 수량과 같다)에 위 E코인의 시가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별지 2 표 '금액' 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I의 이사 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I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I은 스위스 법인이고, I의 E코인 발행 등 행위 역시 스위스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가 정한 요건인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 이 부분 청구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

¹²⁾ 원고들은 이 사건의 최종 변론 과정에서 피고 C, D에 대하여 피고 B, A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한편, 피고 C의 I 이사의 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철회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면서도, 종전에 청구하였던 피고 C, D에 대한 J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한다는 취지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으므로(원고의 2024, 8, 7, 자 준비서면 제4 내지 7면 참조), 원고들이 피고 C, D에 대하여 J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피고 B, A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였다.



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의 I 이사 지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국제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한편, 구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C의 I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데, I의 이 사건 에어드랍 관련 제반 업무 역시 스위스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 청구의 준거법은 스위스 민법이 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피고 C의 본안전항변은 원고들이 위 피고에 대하여 I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종전에는 피고 C에 대하여 J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위에 기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I 이사의 지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하였으나, 이후 I 이사의 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철회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J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 및 피고 B, A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지위에 기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있다(원고의 2024. 8. 27. 자 준비서면 제1 내지 4면 참조).

원고들 전원¹³⁾ 및 피고 C, D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에 있고, 피고 B, A, J는 모두 대한민국 법인이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한 관할권은 대한민법 법원이 가지고, 준거법 역시 대한민국 법률이 될 뿐이며, 이와 달리 국제재판관할권이나 준거법 등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본안전항변이나 준거법 관련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¹³⁾ 종전 원고들 중에서 Z(종전 원고 순번 18번)의 주소지가 미합중국 소재지였고, Z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전원의 주소지는 대한민국 소재지였으나, 위 Z는 2024. 8. 30.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원고들 전원의 주소는 대한민국 소재지로 되었다.



1) 먼저 피고 C의 J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 피고 D의 J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기한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갑 제7, 9, 20 내지 22, 28, 32호증 및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I은 F코인 보유자들이 이 사건 에어드랍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안키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W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원고 X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P 커뮤니티 혹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에어드랍을 신청했는데 E코인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한 점, ③ 한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정보보털인 AB(인터넷주소 2 생략)은 J를 '블록체인 플랫폼인 P를 개발하는 회사이고, I의 지분 100%로 이루어져 있다.'고 소개한 바 있는 점, ④ J는 원고 AC이 위와 같이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발송하였던 항의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며, I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I의 E코인 발급 관련 행정 업무 중 일부를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증인 AA의 증언,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J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로서, 피고 D가 J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원고들에게 상법 제401조(피고 C의 경우 상법 제401조의2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가) 애당초 앞서 본 사정들 또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가 I으로부터



- 이 사건 에어드랍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I이 2019. 5. 13.경 직접 그 블로그에 E코인 발급 절차에 관한 안내 글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참조), J가 I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이 사건 에어드랍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인지를 명백히 알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 나) 나아가 설령 J가 I으로부터 이 사건 에어드랍 절차를 위탁받아 이를 진행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어드랍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① I은 기존 F코인을 소각하면서 그에 갈음하여 E코인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F코인에 대한 소각 없이 이 사건 에어드랍 신청을 한 F코인 보유자들에 한하여 E코인을 추가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은 이 사건 에어드랍 절차를 통해 단지 F코인보유자들에게 새로이 E코인을 배급받을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I이 J로 하여금 모든 F코인 보유자들에게 일률적으로 E코인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에어드랍 관련 업무가 위법하게 집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② 이 사건 에어드랍 신청 접수는 2019. 3. 25.부터 2019. 9. 30.까지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이 신청 접수가 이루어진 약 6개월의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③ I 또는 J가 이 사건 에어드랍의 신청 과정에서 원고들이 보유한 F코인의 보안키 입력을 요구한 것이 다소 이례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F코인의 소각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이 사건 에어드랍 신청을



위해 특정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I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점, © 이 사건 에어드랍을 신청한 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에어드랍을 신청하는 F코인보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키의 입력을 요구하는 것에는 나름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 실제로 앞서 1.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에어드랍 대상 E코인 중 55%에 이르는 E코인 보유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에어드랍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보면 I이 설정한 에어드랍 신청 절차가 F코인 보유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에어드랍 신청에 보안키 입력을 요구한 것이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④ 한편, 원고 W, X 실제로 이 사건 에어드랍 신청 절차를 이행했는데도 E코인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20,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W, AC이 I이 요구한 에어드랍 신청 절차를 실제로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 ⑤ 그 밖에 원고들은 차별적 지급 거절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들이 I 또는 J가 요구하였던 신청절차를 실제로 이행하고 이 사건 에어드랍을 통하여 E 코인을 지급받은 F코인 보유자들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 취급을 당했다는 것인지에 관한 주장·증명은 하지 않고 있다.
- 다) 뿐만 아니라 피고 C, D가 이 사건 에어드랍 관련 실무를 직접 담당하였다거나, 원고들에 대하여만 에어드랍을 하지 말 것을 J의 실무자에게 직접 지시하였다거나, 그밖에 이 사건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들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설령 J가 원고들에 대하여 E코인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 C, D가 원



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C, D의 피고 B, A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위에 기한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앞서 1. 가. 4)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가 피고 B이 설립되었을 무렵부터 2023. 3. 14. 이전 무렵까지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바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사실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에어드랍 절차는 2019. 3. 25.부터 2019. 9. 30.까지 이루어졌던 반면에 피고 B, A가 설립되었던 날은 위 에어드랍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이후인 2021. 3. 22.이었던 사실 역시 앞서 1. 다. 및 라.에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여보면, 설령 피고 C, D에게 피고 B, A의 이사 또는 이사에 준하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 A가 설립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에어드랍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 C, D가 피고 B, A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피고 B, A에 대한 각 E코인 인도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2-18

재판장 판사 윤찬영

판사 이현우

판사 김보운



[별지 1]

원고들 목록

- 1. AD
- 2. AE
- 3. AF
- 4. AG
- 5. AH
- 6. AI
- 7. AJ
- 8. AK
- 9. AL
- 10. AM
- 11. AN
- 12. AO
- 13. AP
- 14. AQ
- 15. AR
- 16. AS
- 17. AT

이하 별지 생략(순번 18~169)